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6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7990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7. 5. 23.

판 결 선 고 2017. 6.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인 B, 원고의 형제자매인 C, D, E(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4. 12. 6. 망 F이 사망함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의 주식을 상속받았는데, 2009년말 합계 10,854,300,000원(그 중 원고 소유가액은 1,108,360,000원이다), 2010년말 합계 14,697,706,000원(그 중 원고 소유가액은 722,281,000원이다), 2011년말 합계 17,830,230,000원(그 중 원고 소유가액은 673,080,000원이다), 2012년말 합계 15,112,990,000원(그 중 원고 소유가액은 519,375,000원이다)을 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12.부터 2013. 3. 21.까지 G 주식 총 7,150주를 합계 1,111,497,000원에 양도하면서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 등에 근거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등이 소유한 G 주식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이어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01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6,547,290원(가산세 포함),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792,300원(가산세 포함),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827,580원(가산세 포함),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570,1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6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8.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의 입법취지는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와 같이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려는 것에 있는데,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하 '친족관계'라 한다)에 속하는 특수관계인을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세목인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한 친족관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해당 납세의무자로서는 특수관계인의 해당 상장주식의 소유 여부 및 그 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은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대주주를 다른 일반 주식거래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며, 연좌제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원고 등은 경제적 연관관계 없이 독립적 생활을 해왔고,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현황을 알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로서는 G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6

과세관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납세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의 하나로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들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부동산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함과 아울러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 이와 같이 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리고 상장주식 등을 이용한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등을 양도하는 해당 주주 1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등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도 일체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6

파악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위임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규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대주주 해당 기준과 대주주의 주식보유 상황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규모로 상장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자신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직계존비속 내지 형제자매 사이에 해당하는 원고 등의 관계나 주식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B, C, D 및 E의 보유주식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시행령조항이 헌법상 평등원칙, 조세법률주의, 자기책임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연좌제 금지원칙 등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한편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6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세법 해석상 의심스러운 부분으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그 과세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이 이미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헌법 제10조 등에 반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두43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원고 등의 혈연관계나 주식 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비교적 용이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가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6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6

별지 1.

지방소득세 부과내역

no	성 명	과고(처분청)	지방소득세(원)	처분일자	비 고
1		[redacted]구청장	6,547,290	2016. 2. 1.	
2		[redacted]구청장	1,792,300	2016. 2. 1.	
3		[redacted]구청장	1,827,580	2016. 2. 1.	
4		[redacted]구청장	570,150	2016. 2. 1.	
	합 계		10,737,3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6

별지 2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26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끝.